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80 |
|----------|----|

제출년월일 : 2019. 2.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 및 삭제(안 제2조 제4호 ~ 제8호)

-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정의 신설
- “사용료 등”의 정의 개정 및 세분화하여 신설
- “육아누리도서관” 정의 삭제

나. 기능 신설 및 삭제(안 제4조제8호)

-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기능 신설
- “육아누리도서관” 기능 삭제

다. 사용 신청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라. 사용료 등 규정 개정 및 관련 별표 신설(안 제10조 제2항, 제3항, 별표2, 별표3)

- 명칭(수강료) 삭제 및 관련 별표 변경
-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이용료

마.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및 관련 별표 개정(안 제13조 제3호, 별표4)

- 감면 기준 추가 및 감면을 변경

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호, 제2호)

- 전부 반환 규정 추가 및 귀책사유 주체에 따라 일부반환 내용 구체화  
사. 시행규칙 제정으로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호 ~ 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8. 12. 26. ~ 2019. 1. 16.)결과: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6) 아동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이·맘 강동육아시티”란 장난감·도서대여,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놀이체험, 자조모임, 발달상담 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및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7. “이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수강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란 회관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관람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 신청

서와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소재 영유아 시설 및 강동구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이·맘 강동육아시터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별표 4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신청 시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용료

1) 회관의 귀책사유 시 : 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시 : 납부한 이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에서 이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 사용목적  | 사용료                           | 비 고   |
|----------------------------------|-------|-------------------------------|---|
| 아이누리홀                            | 일반 행사 | 50,000원                       | 1. 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br>(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br>2. 계약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시간당<br>기준사용료의 150%를 징수함<br>3. 행사 전 사용료는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br>50%로 함 |
|                                  | 업무 협약 | 협약에 따름.                       |   |
| 부대설비<br>○ 피아노<br>○ 프로젝터<br>○ 냉난방 |       | 10,000원<br>10,000원<br>10,000원 | 1. 부대설비 사용료는 1회 사용료임<br>2. 냉난방은 1시간당 사용료임<br>(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프로그램실                            | 업무 협약 | 협약에 따름                        |   |

[별표 2]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 개 인        | 단 체<br>(10명 이상)    | 비 고  |
|-----|------------|------------|--------------------|--|
| 이용료 | 영유아체험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br>(1인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기준임.</li> <li>○ 프로그램 이용시 재료비는 별도로 수납이 가능함</li> </ul> |
|     | 육아지원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  |
|     | 교육 및 세미나   |            |                    |  |
| 입장료 | 공연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br>(1인당) |  |

[별표 3]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이용료(제10조제3항 관련)

| 구분                     |                | 금액                                | 비고                         |            |
|------------------------|----------------|-----------------------------------|----------------------------|------------|
| 회원<br>가입               | 연회비            | 30,000원 이하                        | <환불기준>                     |            |
|                        | 회원카드           | 무료                                |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3,000원        |            |
| 대여                     | 대여비            | 20,000원 이하                        |                            |            |
| 반납                     | 연체료            |                                   | 1점당 1,000원 또는 연체일수만큼 대여 불가 |            |
| 파손,<br>분실에<br>대한<br>보상 | 동일물품이<br>있을 경우 | 회원이 직접<br>동일한<br>것으로 구입<br>또는 A/S |                            |            |
|                        | 단종             | 변상기준에<br>따름                       | <변상기준>                     |            |
|                        |                |                                   | 구매연한                       | 변상의 의무     |
|                        |                |                                   | 구매시기 1년 미만                 | 구매금액의 100% |
|                        |                |                                   | 구매시기 1년~3년 미만              | 구매금액의 50%  |
|                        |                |                                   | 구매시기 3년 이상                 | 구매금액의 30%  |



[별표 4]

이용료와 입장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률(제13조제2항 관련)

| 프로그램 | 대상자  | 감면률  |
|------|--|------|
| 이용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0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   | 100%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100%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10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10%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 50%  |
| 입장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0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   | 100%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100%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10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5%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육아누리도서관</u>”이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u>도서 열람·대여 및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5. “<u>사용료 등</u>”이란 <u>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말한다.</u></p> <p>&lt;신 설&gt;</p><br><p>&lt;신 설&gt;</p><br><p>&lt;신 설&gt;</p> | <p>제2조(용어의 정의)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아이·맘 강동육아시티</u>”란 <u>장난감·도서대여,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놀이체험, 자조모임, 발달상담 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5. ----- <u>사용료, 이용료, 입장료</u>-----<br/>-----.</p> <p>6. “<u>사용료</u>”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u>대관료 및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u></p> <p>7. “<u>이용료</u>”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u>교육의 수강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8. “<u>입장료</u>”란 회관 공연시설을 <u>사용하는 자가 관람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육아누리도서관 운영
9. (생략)

제9조(사용 신청 등)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보육기관 등)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내부기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관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영유아 시설 및 강동구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좌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예약, 현장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회관의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  
-.

1. ~ 7. (현행과 같음)
8.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9.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 신청 등)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 신청서와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재 영유아 시설 및 강동구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예약금 및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가. 나. (생략)

<신 설>

③ 아이·맘 강동육아시터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별표 4

<삭 제>

<삭 제>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

1.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신청 시

2. 일부반환

가. (생략)

나. 수강료 : 첫회 수강 이후 취소 시에만 해당되며, 총 수강 횟수에서 1회차 횟수를 제외한 차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 사용목적  | 사용료      | 비고  |
|---|-------|----------|---|
| 아이 누리홀                                    | 일반 행사 | 50,000 원 |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br>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함.<br>(초과 비용 = 기준액 + 50퍼센트).<br>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br>4. 행사 전 사용은 기준금액의 50퍼센트로 함. |
|   | 업무 협약 | 협약에 따름.  |   |
| 부대설비<br>o 피아노<br>o 영사기<br>o 냉난방<br>o 프로젝터 |       | 10,000 원 | 1. 부대설비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br>2.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임.  |
|   |       | 10,000 원 |   |
|   |       | 10,000 원 |   |
|   |       | 10,000 원 |   |
|   |       | 10,000 원 |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이용료

1) 회관의 귀책사유 시 : 이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시 : 납부한 이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에서 이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삭제>

[별표 1]

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 사용목적  | 사용료      | 비고   |
|----------------------------------|-------|----------|--|
| 아이 누리홀                           | 일반 행사 | 50,000 원 | 1.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br>2. 계약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50%를 징수함<br>3. 행사 전 사용료는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                                  | 업무 협약 | 협약에 따름   |  |
| 부대설비<br>o 피아노<br>o 프로젝터<br>o 냉난방 |       | 10,000 원 | 1. 부대설비 사용료는 1회 사용료임<br>2. 냉난방은 1시간당 사용료임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       | 10,000 원 |  |
|                                  |       | 10,000 원 |  |
|                                  |       | 10,000 원 |  |
| 프로그램실                            | 업무 협약 | 협약에 따름   |  |

[별표 2]

회관의 수강료와 프로그램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개 인              | 단 체<br>(10명 이상)  | 비 고  |
|------------|------------------|--|--|
| 체험·관람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 (1인당)  | ○ 1회 기준임.<br>○ 요리나라 체험 시 재료비는 별도임.               |
| 육아지원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 ○ 1회 기준임.<br>○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할 때 별도로 수납할 수 있음. |
| 교육 및 세미나   | 10,000원 이하       |  |  |
| 대 여        | 도서               | 300원 이하(권당)  | ○ 성내점: 대여권수 5권 이내<br>○ 천호점: 대여권수 4권 이내           |
|            | 육아용품 및 장난감       | 강동구 바우처회원: 월 33,000원 (정부지원금 27,000원/본인 부담금 6,000원)     | ○ 성내점: 대여개수 5점 이내<br>○ 천호점: 대여개수 4점 이내           |
|            |                  | 일반회원: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인 영유아의 부모) 1,000원 ~ 30,000원 (절당) |  |
|            | 택배요금(편도): 3,500원 |  |  |

<신 설>

[별표 2]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개 인         | 단 체<br>(10명 이상) | 비 고             |
|-------|-------------|-----------------|-----------------|
| 이 용 료 |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 (1인당) |
|       | 육아 지원 프로그램  | 10,000원 이하      |                 |
|       | 교육 및 세미나    | 10,000원 이하      |                 |
| 입 장 료 | 공연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 (1인당) |

○ 1회 기준임.  
○ 프로그램 이용시 재료비는 별도로 수납이 가능함

[별표 3]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이용료(제10조제3항 관련)

| 구분                 | 금액             | 비고  |
|--------------------|----------------|---|
| 회 원 가 입            | 연회비 30,000원 이하 | <환불기준><br>구분   환불여부<br>납부일부터 30일 미만   50% |
|                    |                | 회원카드   무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3,000원           |
| 대 여                | 대여비 20,000원 이하 |   |
| 반 납                | 연체료            | 1점당 1,000원 또는 연체일수만큼 대여 불가                |
| 과 손, 분 실 에 대 한 보 상 | 동일 물품이 있을 경우   | 회원이 직접 동일한 것으로 구입 또는 A/S                  |
|                    | 단종             | 변상기준에 따름                                  |
|                    |                | <변상기준>                                    |
|                    |                | 구매연한   변상의 의무                             |
|                    |                | 구매시기 1년 미만   구매금액의 100%                   |
|                    |                | 구매시기 1년~3년 미만   구매금액의 50%                 |
|                    |                | 구매시기 3년 이상   구매금액의 30%                    |

[별표 3]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제13조제2항 관련)

| 프로그램                     | 대상자  | 감면율    |
|--------------------------|--|--------|
| 놀이<br>체험<br>관<br>입장<br>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50 퍼센트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퍼센트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녀                                   | 50 퍼센트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 50 퍼센트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50 퍼센트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10 퍼센트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 50 퍼센트 |
|                          |  |        |
| 뮤지<br>컬<br>입장<br>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50 퍼센트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퍼센트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녀                                   | 50 퍼센트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 50 퍼센트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50 퍼센트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5퍼센트   |
|                          |  |        |

[별표4]

이용료와 입장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제13조제2항 관련)

| 프로그램 | 대상자  | 감면율  |
|------|--|------|
| 이용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0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   | 100%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100%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10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10%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 50%  |
| 입장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0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   | 100%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100%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10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5%   |
|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신설되는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구성에 따른 공사비 및 운영 집기취득, 프로그램 강사비 등 사업운영에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예산편성 내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한다
- 강동어린이회관 운영 집행 기준액을 적용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출      | 일반운영비        | 35,499  | 68,497  | 58,497  | 58,497  | 58,497  | 279,487 |
|         | 일반보상금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118,800 |
|         | 시설비 및<br>부대비 | 60,000  | 60,000  | -       | -       | -       | 120,000 |
|         | 자산취득비        | 45,000  | 114,700 | 74,700  | 74,700  | 74,700  | 383,800 |
| □ 합계    |              | 153,699 | 269,597 | 159,597 | 159,597 | 159,597 | 902,087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 비     |  | 153,699 | 269,597 | 159,597 | 159,597 | 159,597 | 902,087 |
| 합 계     |  | 153,699 | 269,597 | 159,597 | 159,597 | 159,597 | 902,087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6.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장 경 자 (☎ 3425- 7134)